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 포 일	2021. 6. 21. / (총 9 매)			
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	과 장	김 유 미	전 화	043-719-7310
	담 당 자	인 혜 경		043-719-7313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	과 장	이 중 규		044-202-2730
	담 당 자	강 석 원		044-202-2734
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	부 장	조 순 자		033-736-4602
	담 당 자	주 윤 심		033-736-4641

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

◇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(기존 치료 중인 대상자도 포함)
- 잠복결핵감염 치료로 83% 이상 결핵예방 효과, 감염자 치료 권고

◇ 잠복결핵감염 건강보장성 강화로 결핵퇴치 국가 목표 달성 기대

□ **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와 질병관리청(청장 정은경),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**은 2021년 **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*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**없이 치료가 가능**하다고 밝혔다.

*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,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%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(붙임 1 참조)

** 비급여, 100분의100 본인부담금, 예비(선별)급여, 상급병실료 등은 적용 제외

○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**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**해왔으나('15.7월부터) 이번 제도개선으로 **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**하고, **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*으로 확대**한다.

* HIV 감염인,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 또는 예정자,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예정자 중 결핵 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

*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□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**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**되므로 현재 **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(7.1일 이전)도 신청*이 필요**하며, **동일 의료기관**에서 치료 시 **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**없이** 등록할 수 있다(붙임 2 Q/A 참고).

* 신청방법: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'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'를 공단에 제출(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전산 신청 가능)

** 단, 7월 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,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(활동성 결핵 배제)가 없으면 촬영 필요(본인부담금 발생)

○ 또한, **신규 등록자는** 잠복결핵감염 검사 **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(흉부 X선 검사)**를 거쳐 **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***하며,

*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부담임, 다만, 결핵 배제 검사일에 잠복결핵감염을 진단 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하였다면 검사비도 지원

○ 다만, **의료급여 수급자(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)**는 **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**, 현행처럼 **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**한다.

□ 잠복결핵감염 **검사**는 가까운 **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***(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 여부 사전 확인)에서 받을 수 있고, 검사 **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** 및 전염성 **결핵 환자의 접촉자, 결핵 발병 고위험군** 등이다.

<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및 비용부담>

▸ **집단시설 종사자(의무검진 대상)**: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의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

▸ **결핵발병 고위험군**: 전염성 결핵환자(가족, 집단시설) 접촉자*,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인, 장기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,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, 투석 중인 환자, 규폐증 등

*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국가 지원(무료), HIV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 검사 본인부담률 30~60%, 그 외 집단시설 종사자 의무검진은 비급여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○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**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(560개)을 지정·운영**하며 기관 명단*은 **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**할 수 있다.

* 치료 의료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(http://tbzero.kcda.go.kr)에서 확인 가능

□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"**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,** 이번 **건강 보장성 강화**를 통해 **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**한다"고 강조하면서,

○ 잠복결핵은 감염 후 **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%로 높으나,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%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*된 만큼,**

* (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) 잠복결핵감염 치료 받으면 결핵 예방 효과 83%('21.4.14.), 가족 중 결핵환자 있으면 가족접촉자 검진 꼭 받으세요!('21.5.6.)

○ "**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**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**산정특례 등록** 및 **치료 받을 것"을 당부하였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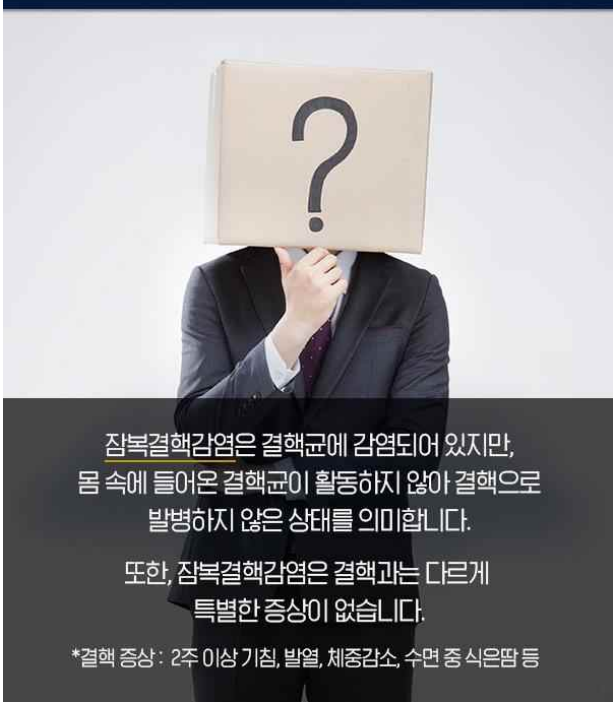
<붙임> 1. 잠복결핵 바로알기
2.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(건강보험 가입자) Q/A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붙임 1 잠복결핵 바로알기

잠복결핵감염이란 무엇인가요?



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,
몸 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
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.

또한,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는 다르게
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.

*결핵 증상 : 2주 이상 기침, 발열, 체중감소, 수면 중 식은땀 등

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면 모두 결핵환자가 되나요?



아닙니다!

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
5% 정도 결핵으로 발병하고, 그 이후 평생에 걸쳐
5% 정도 더 발병하여 총 10% 정도에서 결핵으로 발병하는
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면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나요?



아닙니다!

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는
결핵균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
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습니다.

잠복결핵감염이 결핵으로 발병되지 않도록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가요?



가능합니다!

잠복결핵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
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,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
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하면
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~90%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*잠복결핵 치료 : 1,2가지 항결핵제를 3~9개월간 복용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붙임 2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(건강보험 가입자) Q/A

Q1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은?

○ 공단이 제공한 질환별 산정특례 "필수검사항목"에 따라 검사하고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질환으로 확진

- 잠복결핵 산정특례 대상 상병코드: Z22.7(잠복결핵)

○ 확진한 의사가 「건강보험 (잠복결핵)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」(별지 제3호의2)발급

○ 등록대상자가 「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」에 서명·날인 후 병·의원(전산대행신청) 또는 공단에 신청

- 확진일, 의사발행일, 신청일이 2021.7.1.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잠복결핵 치료 중인 대상자인 경우 모두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

  *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에 자료제공 불가하므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됨을 고지

Q2 잠복결핵 산정특례 적용기간 및 연장 등록 적용 기준은?

○ 등록 후 특례적용 기간은 확진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잠복결핵 상병으로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 적용됨

- 1년을 경과하여 추가적인 잠복결핵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함. 이 경우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종료시점부터 연장 적용됨

Q3 잠복결핵 등록기간 연장 시 기준일은?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○ 등록기간 연장 기준일은 처음 산정특례 등록했을 시의 종료일임
예) 최초 등록일이 2021.7.1일 경우 1년이 경과된 2022.6.30일로부터 6개월인 2022.12.31일까지 산정특례 적용기간임

Q4 **잠복결핵 산정특례(V010)의 진단확진일 기준 및 본인부담 면제 범위는?**

○ 잠복결핵 산정특례 진단확진일: 잠복결핵 진단검사 상 양성이면서 활동성결핵 배제를 위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상 활동성 결핵이 아님이 확인되는 날
예) IGRA 검사결과 확인일이 2021.7.20.이고 활동성결핵 배제를 위하여 실시한 영상검사(X-ray 등) 결과 확인일이 2021.7.30.인 경우 2021.7.30.이 잠복결핵 산정특례 진단확진일임

○ 잠복결핵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(본인부담 0%)되며,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%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함
※ 비급여, 100분의100 본인부담금, 예비(선별)급여, 상급병실료(2~3인실) 및 본인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진 항목 산정특례 적용 제외

Q5 **잠복결핵 상병으로 이미 진료 받고 있는 자가 제도시행일(2021.7.1.)이후 잠복결핵 치료를 위하여 내원한 경우도 산정특례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?**

○ 잠복결핵 산정특례 제도 시행일(2021.7.1.)이전부터 잠복결핵으로 진단받아 해당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2021.7.1. 이후 잠복결핵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여 잠복결핵 산정특례(V010)신규등록신청을 하여야 함.
- 신청대상: 신청일 현재 잠복결핵치료 중인 환자
- 검사여부: 추가검사 없이 산정특례 등록 가능**(단, 잠복결핵 치료 시작 이후 전원한 타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에 촬영한 흉부엑스선검사(X-ray)결과가 확인되어야 함.)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- 신청방법: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'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'를 공단에 제출(진단확진일은 제도시행일인 2021.7.1.로 기재)

※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, 산정특례 등록은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음

○ 잠복결핵 진단확진일이 2021.7.1.이후인 경우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

Q6	**잠복결핵 산정특례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은?**

○ 고시 제7조 3항에 의거, 등록 신청서상의 진단확진일로부터 **30일 이내** 신청한 경우 '**진단확진일**'부터, 등록 신청서상의 진단확진일부터 **30일 이후** 신청한 경우 '**신청일**'부터 적용함

✓ 30일 기간 산정시 확진일은 제외(초일 불산입의 원칙)하고, 토요일·공휴일은 포함

✓ 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

Q7	**여러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(V010) 치료를 받는 경우, 결핵(V000)과 동일하게 치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각각 산정특례 신청하여야 하는지?**

○ 본인부담면제결핵(V000)은 결핵질환으로 확진 받고 치료 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개별적으로 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하여야 하나, 잠복결핵(V010)은 타 의료기관에서 기 등록된 환자인 경우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진료 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 가능

※ 질병관리청에 환자 신고 불필요

Q8	**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?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○ 본인부담 제외되는 잠복결핵으로 산정특례가 등록될 경우 산정특례 등록번호에서 구분코드는 22를 부여

		-			-						
구분			발행연도			일련번호					

※ 구분코드: 암(01), 결핵 V000(08), 중증화상(09), 극희귀질환(11), 상세불명희귀질환(13), 기타염색체이상질환(14), 희귀질환(21), 중증난치질환(23), **잠복결핵(22)**

Q9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도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?

○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함
- 변경 전(국고 지원): 의료기관 및 약국에 본인부담금을 선지불하고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환급, 의료기관 및 약국은 치료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
- 변경 후(산정특례 적용):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잠복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,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0% 적용

Q10 잠복결핵 산정특례(V010)대상자가 치료 도중 결핵 산정특례(V000)대상자로 확진된 경우 산정특례 신청 절차는?

○ V010(잠복결핵) 대상자가 잠복결핵으로 치료 도중 해당 질환 적용 기간[시작(유효)일~상실(유효)일] 내에 V000(결핵)으로 확진 받아 산정특례 등록 신청하는 경우, 결핵 적용시작일 전일로 잠복결핵 산정특례 자격 상실 처리

○ EDI 및 포털 등 전산 대행 등록처리 불가, 「건강보험 (결핵)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」(별지 제3호) 서식을 공단 지사로 접수

예) V010(잠복결핵) 적용기간: 2021.7.1.~2022.6.30.
V000(결핵) 적용시작일: 2021.8.1. 인 경우
→ 잠복결핵(V010) 적용기간: 2021.7.1.~2021.7.31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결핵(V000) 적용기간: 2021.8.1.~9999.12.31.

Q11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잠복결핵 진료로 입원중인 특정기호 V010 환자의 개정 고시 시행일 전후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?

○ 고시 시행일('21.7.1.) 이전부터 잠복결핵 진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으나 제도 시행일 이후 V010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, 제도 시행일 이전 진료분은 종전 본인부담률을 적용, '21.7.1.일부터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적용함. 이 경우,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'21.7.1.일 전·후로 각각 구분·작성하여 분리청구함

※ 7개질병군(DRG), 신포괄수가의 경우 입원개시일이 '21.7.1.일 이후인 경우 특례 적용

- 신포괄수가 입원진료 산정특례 적용기준
  - V010에 해당하는 상병이 주진단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. 단, V010에 해당하는 상병이 기타진단명인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 불가

Q12 신규 등록자인데 활동성 결핵 배제 검사비가 지원되나요?

○ 잠복결핵감염 확진은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을 판정을 받은 후 활동성결핵이 아님을 확인해야 최종 진단되며, 산정특례는 해당되는 질환에 확진을 받고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등록 전 활동성 결핵 검사 배제 검사비는 본인부담입니다.

○ 다만, 활동성 결핵 배제를 위한 영상검사(흉부 X선)를 산정특례 등록일에 검사와 판독이 이루어져 최종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받고, 같은 날 산정특례를 등록했다면 배제검사비도 지원됩니다.

예)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양성자가 '21.7.30일 활동성결핵 배제를 위한 영상검사(X-ray 등)를 받고, 잠복결핵감염으로 확진되어 동일일(7.30일)에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영상 검사비 지원, 그 이외는 본인부담임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